

#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

제정:2020.02.13

개정:2021.05.20

개정:2022.04.23

개정:2023.02.06

**제1조【목적】**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처우, 인권 및 권익보호,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【정의 및 적용범위】** ① “국가연구개발사업”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② “연구개발기관(장)”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(장)을 의미하며, 연구개발기관의 장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.

③ “학생연구자”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·석사·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 할 수 있다.

1. 휴학생 중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2.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
3.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

**제3조【연구개발기관의 의무】**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, 상해·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「연구실안전법」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
3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(미지급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

**제4조【연구책임자의 의무】**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한다.
2.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한다
3.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지급,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.

**제5조【학생연구자의 의무】**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한다.
2.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

한다.

3. 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,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통보한다.

**제6조【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】**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, 졸업요건,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 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【연간 활용계획 수립】**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,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,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8조【연구참여확약체결】**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(또는 학년)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참여확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연구 주제 및 분야, 주요 참여과제명, 연구수행내용, 역할,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2.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, 안전 및 인권·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3.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.

③ 연구참여확약서는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으로 체결이 완료된다.

**제9조【연구참여확약변경】** ①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2.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
3.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
4.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②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으로 변경이 완료된다.

**제10조【업무범위 제한】**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·외 기여, 봉사 활동이나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.

**제11조【학업·연구권 보장】**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2조【부당업무 거부권 보장】**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
**제13조【학생인건비 지급기준】** ①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1. 학사과정 : 월 1,300,000원
2. 석사과정 : 월 2,200,000원
3. 박사과정 : 월 3,000,000원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, 「학술진흥법」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에 따른다.

[본조개정 2023.02.06]

**제14조【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】**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, 균등지급 체계 마련,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,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·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5조【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】**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,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
**제16조【학생인건비 지급】**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**제17조【학생인건비 관리】**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8조【자체점검】** 연구개발기관은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9조【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】**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

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20조【인격권 보장】**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.

**제21조【건강과 휴식 보장】**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22조【안전 보장】**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, 학생연구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**제23조【재정운영 정보 공개】**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과제 수행현황,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타 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24조【고충·상담 창구운영】**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,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·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,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,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5조【위반 시 조치】**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
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.

③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,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, 학생연구자 정원(TO) 조정, 징계위원회 회부,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[별지 제1호 서식]**

##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

연구책임자 000와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.

### 1. 학생연구자 인적사항

성명		학번		생년월일	
소속 (학과명)		과정 및 학기	( )	과정	( ) 학기
과학기술인번호					
주소					
연락처	(휴대전화번호)			(E-mail)	

### 2. 연구참여정보

가. 연구참여기간 : 20 . . . . ~ 20 . . . .

나. 담당업무(역할) :

※ 연구수행내용,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는다. 월 참여율 : %

라. 학생인건비 지급액 : 월 원(세금포함)

마. 학생인건비 지급일 : 매월 일

바. 지급방법 :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

※ 참여중단·종료 시 중단·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(월 등)수에 대해 일할(월할 등) 계산하여 지급함  
사. 연구책임자

성명				
소속 (학과명)		직급		
연락처	(연구실)		(E-mail)	

### 3. 기타 확약사항

가.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.

나.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,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,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.

다.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

-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.
- 라.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고,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안전·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- 마. 연구책임자는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.
  - 바.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(학생인건비부당회수)하지 않는다.
  - 사.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인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  - 아.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인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  - 자.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학생연구자 : (서명 또는 인)

연구책임자 : (서명 또는 인)

연구개발기관장 : 협성대학교산학협력단장 (서명 또는 인)

**\* 본 문서의 승인은 전자날인으로 같음한다.**

※ 유의사항

-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학기(6개월) 또는 년 단위를 원칙으로 함
-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, 사업비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「형법」상의 수사의뢰, 형사고발과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